공 개

의안번호	제 29 호
보 고 연 월 일	2026. 7. 1. (제12차)

보고사항

(대구)유니온저축은행의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과 평가보고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성식
제출 연월일	2026. 7. 1.

1. 보고주문

2025.6.25.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 결정한 (대구)유니온저축은행(이하 "유니온")의 적기시정조치 유예결과에 대한 평가를 별지와 같이 보고한다.

2. 보고이유

□ 금융위는 유니온이 **경영개선계획 이행** 등을 통해 **단기간내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25.6.25.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 부과를 **유예****

* 유니온은 '24.9월말 기준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4등급에 해당하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47① ii)상 경영개선요구 대상에 해당

**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도 단기간 내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금융위에 제출

□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가 유예된 경우, **예보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유예** 결정일부터 **1년 경과 후** 지체없이 유예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하므로,

○ '25.6.25.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가 유예된 **유니온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과를 평가**하여 보고하는 것임

3. 주요골자

□ 유니온은 '25.6.25.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정 후 경영개선계획 이행에 따른 건전성 개선 등으로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였음

* 금감원 경영실태평가('25.12.15.~12.19.) 결과, 종합등급 및 자산건전성이 3등급을 달성하여 경영정상화 보고 완료됨('26.4.29., 금융위)

○ 부실채권 정리 등을 통해 **연체율은 '24.12월말 15.3%에서 '26.3월말 7.2%로 하락**하여 **자산건전성이 개선**

○ **BIS비율은** '26.3월말 **12.22%로 규제비율**(7%)**을 7개 분기 지속 상회**하고, **'25년부터 흑자 전환**하는 등 수익성 지표가 개선됨

【 유니온저축은행 주요 재무현황 】

(단위: 억원, %)

구분		'24.9월말	'24.12월말	'25.12월말	'26.3월말
자산건전성	연체율	16.3	15.3	7.1	7.2
자본적정성	BIS비율	12.91	11.02	11.62	12.22
수익성	당기순이익	△63	△79	12	6

□ 적기시정조치 유예 이후 **경영정상화** 결과, **부실 발생 가정** 시 예상 정리비용 상당액의 **예보기금 손실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붙임1)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적기시정조치)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7조(경영개선요구)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50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등

나. (대구)유니온 현황: (붙임2)

<별지>

(대구)유니온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유예 평가 보고서

2026. 7. 1.

예 금 보 험 공 사

Ⅰ. 보고 이유

◈ **유니온저축은행(이하 '유니온')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 평가 보고서를 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보고**

□ **(보고의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적기시정조치 유예 1년 경과 후 유예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에 보고**할 의무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50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② 제1항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한 경우 감독원장과 예금보험공사(제49조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는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정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주요경과)** 유니온은 '24.9월말 기준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4등급**으로 **경영개선요구*** **대상**에 해당되었으나,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경영개선요구 조치 대상(감독규정 §47① ii)

○ **단기간내 적기시정조치 요건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위**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25.6.25.)

* '24.12월말 및 '25.3월말 기준 종합등급 및 자산건전성을 3등급(계량등급)으로 개선하였고, 향후 개선된 등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유니온은 **대주주 유상증자('25.4월, 20억원)** 등 정상화 추진에 따라 **'25.9월말 종합등급 3등급**을 유지하는 등 **경영정상화 달성***

*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25.12.15.~12.19.) 결과에 따라 금융위 보고 및 적기시정조치 절차 종결('26.4.29.)

□ **(보고이유)** 유니온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정일**('25.6.25.)**로부터 1년**이 **경과**함에 따라 유예 평가보고서를 금융위에 보고하고자 함

Ⅱ.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과 평가

◈ **자산건전성 개선 등 정상적 영업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자본적정성 및 수익성도 개선되었음**

1 자산건전성

□ '25.6월 적기시정조치 유예 이후, 유니온은 **매·상각 등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 **'26.3월말 연체율, 고정이하비율**이 각각 **7.2%, 6.8%**로 **'24.12월말**(15.3%, 15.0%) 대비 개선(업계 수준 회복)

* 당초 저축은행이 계획한 정리금액(80억원)을 초과하여 282억원 정리

○ **자산건전성** 계량등급은 '24.12월말 이후 '26.3월말까지 **6개 분기 연속 3등급 이상을 유지**하는 등 건전성이 개선

【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

(단위: 억원, %)

구 분	'24.9월말	'24.12월말	'25.12월말	'26.3월말
총대출금	2,676	2,896	2,657	2,535
연체율	16.3	15.3	7.1	7.2
고정이하여신비율	19.7	15.0	7.7	6.8
자산건전성 계량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 ('26.3월말 기준 업권 평균) 연체율 6.65%, 고정이하여신비율 8.60%

2 자본적정성

□ **'26.3월말 BIS비율**은 **12.22%**로 **'24.9월말부터 7개 분기 연속 11% 이상**을 유지하여 **규제비율**(7%)**을 상회**

※ '25.4월 대주주의 20억원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확충

【 BIS 자기자본비율 】

구 분	'24.9월말	'24.12월말	'25.12월말	'26.3월말
BIS비율(%)	12.91	11.02	11.62	12.22

※ ('26.3월말 기준 업권 평균) BIS비율 15.99%

3 수익성

□ 자산건전성 악화에 따른 **부실채권 증가**로 **'24년도 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25년**부터 **순이익**('25년말 12억원, '26.3월말 6억원) **전환**

○ 이는 부실채권 매각에 따른 **대손비용 환입*** 등에 기인하며, 조달비용 감소로 **순이자마진(NIM)도 개선**

* 대손상각비: ('24년) 80억원 → ('25년) △11억원

【 수익성 지표 】

(단위: 억원, %)

구 분	'24.9월말	'24.12월말	'25.12월말	'26.3월말
당기순이익	△63	△79	12	6
순이자마진	1.77	1.84	2.16	2.40

Ⅲ. 종합 평가

□ 유니온은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정('25.6.25.) 후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 **자산건전성을 개선**하였고,

○ 대주주 증자 등을 통해 **자본적정성 및 수익성도 개선**하여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였음

* 금감원 경영실태평가('25.12.15.~19.) 결과, 종합등급 및 자산건전성 3등급 달성

□ 적기시정조치 유예 이후 **경영정상화** 결과, **부실 발생 가정** 시 예상 정리비용 상당액의 **예보기금 손실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됨

(붙임 1)

관 계 법 규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적기시정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譴責) 또는 감봉
2.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7.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引受)
8. 영업의 양도나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면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1. 영업의 전부정지
2. 영업의 전부양도
3. 계약의 전부이전

4. 주식의 전부소각에 관한 명령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

⑤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7조(경영개선요구) ① 금산법 제10조에 따라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제1호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
2. 제4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46조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영업소의 폐쇄·통합 또는 신설제한
2. 조직의 축소
3.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4. 예금금리수준의 제한
5. 자회사 정리
6. 임원진 교체 요구
7. 영업의 일부정지
8. 합병,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자 인수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계획의 수립
9. 제46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제50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①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은 적기시정조치 대상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적기시정조치 대상 상호저축은행이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자본 확충, 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내에 금산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기시정조치 유예 여부가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지 여부를 감안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제1호 전단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제1호 후단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한 경우 감독원장과 예금보험공사(제49조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는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정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 2)

(대구)유니온저축은행 현황

('26.3월말 기준, 단위: 억원, %)

대 표 이 사	■ 강용석('68년생)
주 요 주 주	■ 강용석(76.2%), 박영숙(7%)
인 력 및 조 직	■ 임직원 33명(임원 4명, 직원 29명) ■ 영업점: 본점 1개(대구 중구)
연 혁	■ '99.09 ㈜유니온신용금고 설립 ■ '99.10 ㈜대한상호신용금고 계약이전 ■ '01.06 유상증자 10억원 ■ '02.03 ㈜유니온상호저축은행으로 상호변경 ■ '07.07 30억원 유상증자 ■ '13.02 30억원 유상증자 ■ '13.06 20억원 유상증자 ■ '13.11 20억원 유상증자 ■ '13.12 50억원 유상증자 ■ '14.06 3억원 유상증자 ■ '14.12 5억원 유상증자 ■ '17.11 본점 이전(대구 중구) ■ '22.06 대표이사 강용석 취임 ■ '25.04 20억원 유상증자(자본금 135억원)

구 분		'22.12월	'23.12월	'24.12월	'25.12월	'26.3월
자산 총계		3,708	3,050	3,381	3,487	3,330
	여신 총계	2,825	2,577	2,896	2,657	2,535
부채 총계		3,284	2,691	3,098	3,171	3,006
	수신 총계	3,203	2,610	3,035	3,077	2,931
자기자본		423	358	283	316	324
	자본금	129	129	129	135	135
당기순이익		44	△42	△79	12	6
주요 재무 지표	BIS비율	14.80	16.37	11.02	11.62	12.22
	고정이하 여신비율	2.3	12.7	15.0	7.7	6.8
	연체율	1.5	11.3	15.3	7.1	7.2
	ROA	1.2	△1.3	△2.6	0.35	0.49
	유동성비율	191.8	245.3	411.5	300.1	360.5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소관부서	중소금융과	저축은행리스크관리부
연 락 처	02-2100-2993	02-758-0552